

# 01. 목적



## 훈 령

### 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학교 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법적근거

기재요령  
안내

목적 등



## 해 설

### 1. 제1조(목적)

- 가. 학교생활기록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관찰·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의 인적사항, 학적사항, 출결상황,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, 교과학습발달상황,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, 그 밖에 교육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·관리하도록 하고 있다.
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(교육부령 제188호)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- 다.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(교육부훈령 제321호)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
인적·학적  
사항

출결상황

창의적  
체험활동상황교과학습  
발달상황행동특성  
및 종합의견기타  
사항 등

참고자료